

◆ D-32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하여
연봉액을 정한 다음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정산
할 수 있는가?

1. 연봉액에 퇴직금포함 정산할 수 있는 요건

(노동부 유권해석 임금68207-287, '97.5.21)

1)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

- ①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,
-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(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근로자 자필로 작성)가 있어야 하며,
- ③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.

2. 퇴직금산정방법

-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일수 /365
연봉액 전체액의 8.33%가 퇴직금액임.

3. 연봉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예시

- ① 연봉은 (18,000,000원)으로 하되, 위 연봉의 12/13은 매월분할 지급하고, 1/13 퇴직금으로 지급한다.
- ② 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1/13은 “을”이 중간정산요구시에는 1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임금지급시에 중간정산지급하고, “을”이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보험에 예치하였다가 퇴직시에 지급한다.
- ③ 위 월급 1,384,615원에는 “을”이 근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하되 그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. 기본근로 226시간분 63%, 연장근로 69시간해당분 28.7%, 휴일근로 20시간 해당분 8.3%가 포함되어 있다. (1일 10시간, 월2회 휴일근로시)